발 간 등 록 번 호
11-1190000-000161-01

2007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EITC) 해설

재정경제부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해설

2007

재정경제부

CONTENTS

근로장려세제 해설

Ⅰ. 근로장려세제 개요 5
1. 도입배경 9
2. 도입 과정 11
3.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4

Ⅱ. 제도의 시행여건 17
1. 소득파악 측면 18
2. 재정여건 측면 21
3. 세무행정 측면 22

Ⅲ. 법률적 체계 23

Ⅳ.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7
1. 적용단위 28
2. 신청자격 29
가. 부양자녀 기준 29
나. 총소득 기준 33
다. 재산 기준 34
라. 기타 기준 37

CONTENTS

Ⅴ. 근로장려금의 산정	39
1. 근로장려세제 모형	40
2.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43
3. 근로장려금의 산정	46
Ⅵ. 신청과 지급	49
1. 신청 및 지급절차	51
2. 불복절차	55
3.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57
Ⅶ. 향후 추진 과제	61
1.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62
2.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63
3. 제도의 단계적 확대	64
4. 복지제도 체계내에서의 근로장려세제 역할	65
※ 근거법령	67
※ 관련서식	89

I

근로장려세제 개요

1. 도입 배경 | 09
2. 도입 과정 | 11
3.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14

E I T C

Ⅰ. 근로장려세제 개요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다시 말해,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이하인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 이번에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는 '08년부터 시행되며,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09년에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충족하는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근로자 가구는 '09년부터 80만원(800만원×1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제5장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1975년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미국은 이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현재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국 · 프랑스 · 뉴질랜드 · 캐나다 등 선진 각국도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저소득 근로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 위주의 복지정책(Welfare)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로 전환해 나가는 선진국형 복지 정책이며,

–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정부는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Ⅰ. 근로장려세제 개요

〔각국의 근로장려세제 운영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프 랑 스
명 칭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WTC (Working Tax Credit)	PPE (Prime pour l' Emploi)
도입연도	'08년부터 시행	'75년	'88년 Family Credit 도입 '99년 WFTC (Working Families Tax Credit) '03년 WTC 시행	'02년
운영주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적용단위	가 구	가 구	가 구	가 구
최대급여 (아동2인기준)	80만원	$4,400('05년)	£ 3,875('05년)	€ 605('05년)
최대적용 소 득	1,700만원	$37,263('05년)	£ 13,910('05년)	€ 24,547('05년)
지급주기	1년	1년	월 / 2주	1년
수급가구*	31만 가구 (전체가구 대비 1.8%)	219만 가구 (19.1%)	180만 가구 (7.3%)	800만 가구 (22.8%)
소요예산*	1,500억원 (정부지출 대비 0.08%)	$397억 (0.87%)	£ 43,5억 (1.14%)	€ 40.2억 (0.44%)

* 미국 · 프랑스 '05년 기준, 영국 '04년 기준, 한국 '09년 추정

1 도입 배경

근로빈곤층 증가 추세

○ 최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제의 양극화로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로 근로빈곤층이 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실업률 추이
  - 6.3%('99)→4.0%('01)→3.6%('03)→3.7%('05)→3.2%('06. 11)

* OECD 국가의 실업률('04년 기준, 2006 OECD Factbook)
  - 한국 3.7%, 미국 5.5%, 영국 4.7%, 프랑스 9.6%, 호주 5.5%, 캐나다 7.2%, 평균 6.9%

○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율* 도 최근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상대적 빈곤율 추이
  - 10.6%('03년) → 11.1%('04년) → 11.2%('05년) → 10.8%('06년)

*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수/전체 가구수)
  -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

1. 도입 배경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취약성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노인 · 장애인 등 근로능력 부족으로 빈곤에 처한 전통적인 빈곤층과는 달리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이 있습니다.

○ 특히,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노령과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차상위 근로빈곤층

-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계층

* 차상위층 사회보험 가입률('02년 기준)

- 국민연금(36.7%), 산재보험(59.7%), 고용보험(27.7%), 의료보험(98.2%)

○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장려세제를 통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 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도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도입 과정

제도의 도입 검토

○ 근로장려세제는 '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구축을 검토함에 있어 일할수록 그 보상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

○ '05. 8월 제6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추진이 결정되고, '05. 12월 EITC 추진기획단이 재경부와 국세청에 설치되면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 '06. 1월~8월까지 제도설계를 위한 분석작업과 공청회('06.6)를 거쳐 '06. 8월 근로장려세제 정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06. 7월에는 공모를 통하여 EITC의 새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로소득지원세제"에서 "근로장려세제"로 바꾸고, 지급되는 급여의 명칭을 "근로장려금"으로 정하였습니다.

2. 도입 과정

근로장려세제 입법 및 시행

○ 근로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되어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06. 9. 29.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06. 12. 26. 국회에서 근로장려세제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의결되어 '06. 12. 30. 공포되었습니다.

○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지급됩니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

○ 근로장려세제 시행 초기에는 소득파악 수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제도정착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

○ 우선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제도 도입 경과

'04. 11	제56회 국정과제회의에서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결정
'05. 7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 공청회
'05. 8	EITC 도입 추진 결정
'05. 10	국세청에 『소득파악인프라 추진단』 설치
'05. 12	재경부에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설치
'06. 1~ 8	제도 설계를 위한 의견수렴 • EITC 정책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
'06. 6	제도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
'06. 7. 31	새명칭 결정(EITC 새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근로장려금'으로 선정)
'06. 8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
'06. 8. 21	근로장려세제 정부안 발표('06년 세제개편안)
'06. 9	정부내 입법절차 완료(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06. 9. 29	세법개정안 국회제출
'06. 12. 26	제264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06. 12. 30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특법 공포
'07. 2. 28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특법시행령 공포
'07. 3. 30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특법시행규칙 공포

3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도입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득지원정책입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사회보험 제도와 함께 소득계층별, 대상 특성별로 체계화된 사회안전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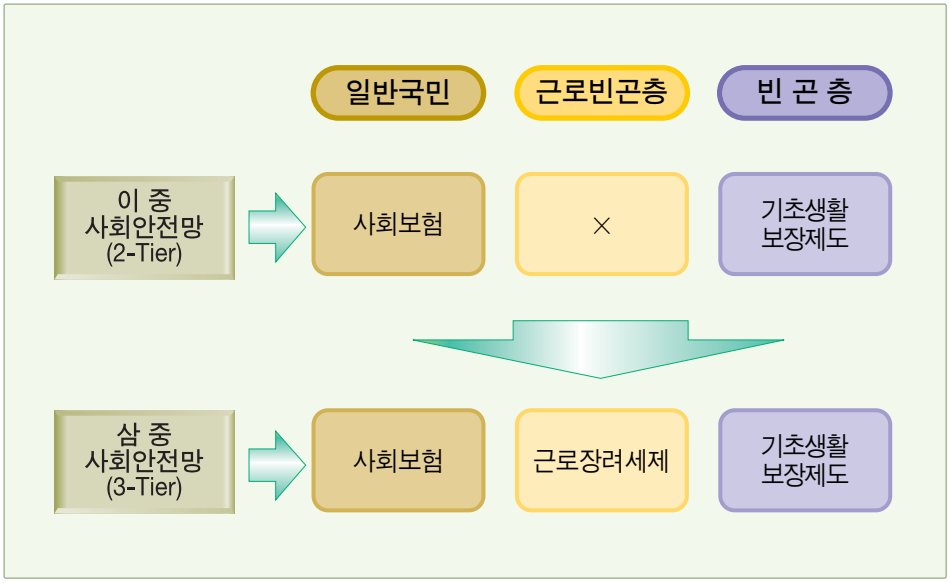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 기존 복지제도는 수급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야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인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빈곤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근로유인의 제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주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와 연계한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조세 · 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소득파악 인프라의 확대로 근로자 ·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고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세원투명성의 제고는 적정한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적정 부담 등을 가능하게 하여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II

제도의 시행여건

1. 소득파악 측면 | 18
2. 재정여건 측면 | 21
3. 세무행정 측면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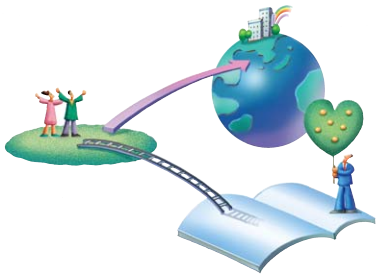

E I T C

1 소득파악 측면

근로자의 소득파악

○ 근로자의 경우 '04년 현재, 국세청이 전체 근로자의 약 72%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등을 통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간 소득파악이 저조하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06년부터 처음으로 임금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으며, '06년 3/4분기까지 190만명에 대한 지급조서가 제출되어 소득파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 또한, '07년부터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미제출액의 2%)가 부과됨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율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소득파악 취약업종 및 취약분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소득파악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하여 지급조서 제출율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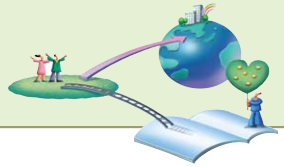

사업자의 소득파악

○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자료 보유율은 50% 수준('04년 기준)으로 소득파악 수준이 낮아 현단계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면서 사업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 · 어민의 소득파악

○ 농 · 어민의 경우 농민의 60% 이상이 1ha(약 3,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등 영세 농업구조로서 소득파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하는 EITC 적용이 곤란합니다.

○ 다만, 정부는 농 ·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소득에 대한 비과세('09년까지), 영세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 · 어민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농 · 어민에 대한 소득파악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을 위한 '05년 세제개편 내용

- 일용근로자와 비과세 · 분리과세되는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부과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07년 부터)
-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강화
  -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국세청 수집근거 마련
  - 기초수급자 현황자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등 수집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06년 세제개편 내용

- 현금거래 노출 강화
  - 소비자상대 업종(소매, 음 · 숙박, 학원업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화
- 국세청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상 대금 결제시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화
- 근거과세 확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3,600~7,200만원 → 2,400~6,000만원)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적용시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10%→15%)
- 무신고 ·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강화(10~20% → 20~40%)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07년 계획)

- 2/4분기, 국세청, 4대 사회보험 기관 등 세원관련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
- 3/4분기,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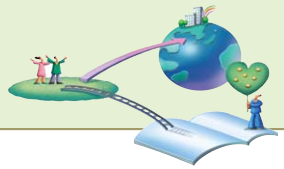

2 재정여건 측면

소요재원 추정

○ '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소득파악 수준, 재정여건 등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필요 최소한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09년에 처음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근로자 가구 31만 가구에 대하여 연간 약 1,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원조달방안

○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재원은 소득세 자연세수 증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세수 증가폭〕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소 득 세	11,541	4,975	16,268	26,467	12,165	63,538
근로소득세	11,578	△577	7,463	14,534	5,636	18,624

3 세무행정 측면

세무행정 체계 정비

○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 신청, 소득금액 확인과 지급 등 근로장려세제의 집행에 관한 업무는 물론

– 지금까지 세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과세미달자가 근로장려세제의 주된 적용대상이므로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됩니다.

○ 국세청은 기존의 개인별 소득 · 재산 자료를 가구단위로 구축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완과 함께 신청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II

법률적 체계

E I T C

Ⅲ. 법률적 체계

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

○ 근로장려금은 세법상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로서 조세체계를 이용한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소득지원금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되며, 소득세법의 신고 · 결정절차와 연계되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운용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세무상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결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 1 ~ 31)에 신청하여야 급여액이 확정됩니다.

-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우선 상계처리됩니다.

- 근로장려금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따라 초과금액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이 초과환급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추징절차에 따라 환수됩니다.

※ 미국도 EITC 급여를 과거에 과다납부한 세액(overpayment)으로 간주하고 이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IRC §6401(b))

근로장려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이유

○ 근로장려세제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세법체계내에 편입하되,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탄력적 입법 등이 용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였습니다.

○ 근로장려세제 도입 초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되, 제도가 정착되고 일반적인 제도로 성숙한 단계에서 소득세법에 이관하여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소 득 세
적용단위	가구(부부)	개인
근로장려금의 성 격	세액공제액의 기납부세액 간주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해당 개념 없음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없는 것으로 함)
적용계층	근로자가구만 적용	근로자, 사업자도 적용

Ⅲ. 법률적 체계

※ 미국도 최초 도입시에는 특별법인 Tax Reduction Act 1975로 입법하고 제도가 정착된 후에 세법에 편입('78년)한 바 있습니다.

※ 외국의 입법 사례

- 소득세법에 규정 :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 조특법에 규정 : EITC 최초 도입시의 미국
- 특별법에 규정 : 영국, 호주

IV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적용단위 | 28
2. 신청자격 | 29
   가. 부양자녀 기준 | 29
   나. 총소득 기준 | 33
   다. 재산 기준 | 34
   라. 기타 기준 | 37

E I T C

1 적용단위

가구단위 적용

○ 근로장려세제 정책목표인 저소득 가구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가구단위로 적용합니다.

–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 영국 등도 가구단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를 가구단위로 운영하더라도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산정의 단위로만 운용하는 것이므로 위헌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례 : 시혜적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98헌바14)

○ 실제로 영국은 과세는 개인단위로 이루어지지만, 근로장려세제 관련 제도는 가구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체계인 우리나라도 근로장려세제를 가구단위로 운영하더라도 국세청의 전산능력을 확충하면 집행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부양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 1,700만원 미만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가. 부양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부양

부양자녀 기준 설정 근거

○ 근로장려세제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 2인 이상 부양가구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양자녀별 근로자가구 현황〕

전 체 근로자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없는 가구	18세 미만 자녀 부양 가구			
		합 계	자녀1인 가구	자녀2인 가구	자녀3인 이상가구
857만가구	471만가구	386만가구	153만가구	205만가구	28만가구
100%	55%	45%	17.7%	23.9%	3.2%

* '94년 12월 기준

○ 외국의 경우에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할 당시 아동부양 가구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가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경우에도 지원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 미 국
  - '75년~'93년 : 아동 있는 가구만 적용
  - '91년부터 : 아동 1인, 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 '94년 이후 : 아동 없는 가구도 적용

* 호주 · 뉴질랜드 : 아동 부양가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

부양자녀의 연령기준

○ 부양자녀의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연령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 이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연령기준과 일치하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18세 이상이면 성년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 한편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제2급 장애등급 해당자,
  시각장애인 · 정신지체인 등의 경우 제3급 장애등급 해당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참고〉 장애등급별 중증 · 경증 분류기준표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장애인 복지법	지 체 장 애	●	●	● 상지 / ○ 하지	○	○	○			
	뇌병변장애	●	●	●	○	○	○			
	시 각 장 애	●	●	●	○	○	○			
	청 각 장 애		●	○	○	○	○			
	언 어 장 애			○	○					
	정 신 지 체	●	●	●						
	정 신 장 애	●	●	●						
	발 달 장 애	●	●	●						
	신 장 장 애		●			○				
	심 장 장 애	●	●	●		○				
	호흡기장애	●	●	○						
	간 장 애	●	●	○		○				
	안 면 장 애		●	○	○					
	장 루 장 애		●	○	○	○				
	간 질 장 애		●	○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국 가 유 공 자	●	●	●	○	○	○	○		

1) ● : 중증 장애인, ○ : 경증 장애인 (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장애는 중증으로 분류)
2)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수 있음

부양자녀의 소득 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부양자녀가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근로장려세제상 부양자녀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자격

○ 부양자녀로 인정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부양자녀 소득 기준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700만원 수준임

부양자녀의 범위

○ 부양자녀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도 포함시켰습니다.

○ 한편,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 ·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양자녀의 판정 기준일

○ 부양자녀 해당여부의 판정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양자녀가 당해 연도 중에 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모두 당해연도의 부양자녀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총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연 1,700만원 미만

총소득 기준의 설정근거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당해 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 때 총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연간 총소득 1,700만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서 OECD 기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의 50% 이하) 수준과 유사하며

– 최저생계비('06년 4인가족 기준 1,404만원)의 1.2배 수준으로서 근로장려세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중위소득

•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가구 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대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 ·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은 그 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 "0"으로 보아 경비의 과다 계상을 통한 총소득의 인위적인 조정을 방지합니다.

○ 한편, 과세제외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동일하므로 총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등은 일시적 소득에 불과하고 고액인 경우 재산기준에 의해 확인되어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 재산기준 : 무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 1억원 미만

재산기준의 설정 근거

○ 근로장려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재산의 다과보다는 소득의 다과에 따라 적용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 소득파악이 완전하지 아니한 시행초기인 점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일정한 재산기준에 의해 제한하였습니다.

참고 소득세 과세체계

〔소득세 과세체계〕

종합소득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조특법상 소득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자		
	장애자		
	부녀자		
	자녀양육비		
다자녀 추가공제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자 중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나 사업소득자 등은 연 1백만원 공제(표준공제)

재산합산 범위

○ 주택보유, 일반재산 기준은 재산의 세대 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1 세대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시의 세대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1세대 범위와 관계없이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
-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연령이 30세이상, 배우자의 사망 · 이혼 또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때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산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방법

○ 합산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평 가 방 법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대상의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시가표준액
전 세 금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세금 및 보증금
금융재산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과 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유가 증권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주식, 채권	상장주식 :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및 채권 : 액면가액
골프장 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국세청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토지상환채권 • 주택상환사채	입주권 : 기존건물평가액±청산금 분양권 : 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토지상환채권 : 액면가액 주택상환사채 : 액면가액

라. 기타 기준

외국인의 경우

○ 근로장려세제의 공공부조적 성격을 감안하여 도입 초기에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합니다.

○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 적용

○ 미국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한 EITC 적용에 있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취업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사례
  - 미국 EITC :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취업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배우자가 내국인(영주권자)인 경우로 제한
  - 영국 WTC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캐나다 CCTB · NCBS : 배우자가 내국인(영주권자)인 경우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 도입초기에는 근로빈곤층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 이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근로유인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근로장려금을 이중 수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거주자가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V

근로장려금의 산정

1. 근로장려세제 모형 | 40
2.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 43
3. 근로장려금의 산정 | 46

E I T C

1 근로장려세제 모형

모형설계

○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경제 · 사회 · 인구구조와 사회복지체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국의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로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대상과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는 점증구간(10%)과

- 일정 소득구간 이상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점차로 줄어드는 점감구간(-16%)을 설정하되,

- 점감구간 앞에 근로장려금의 최대급여가 유지되는 평탄구간을 설정함으로써 점감구간에 따른 근로유인 저해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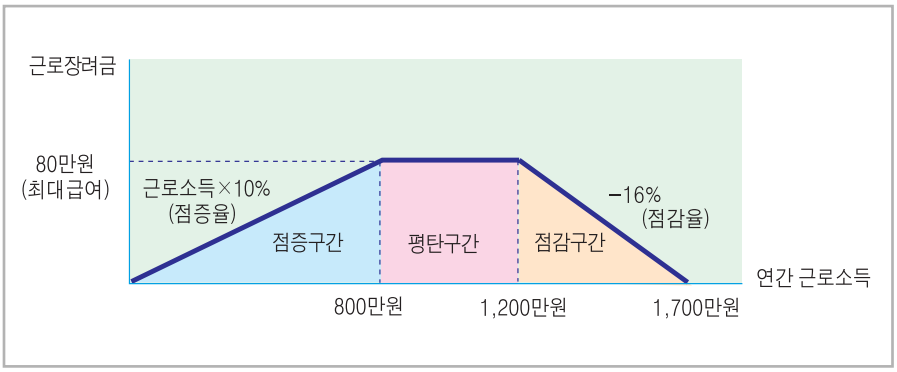

소득구간 · 급여율 설정

▶▶ (최대적용소득) 연간 1,700만원

○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이 되는 최대적용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이며,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인 연간 1,7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평탄구간) 800만원~1,200만원

○ 평탄구간은 근로장려금 최대급여(80만원)가 유지되는 구간으로 근로자 평균임금(약 2,000만원)의 40~60%를 적용받는 상대적 저소득 근로자가 최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점증율) 근로소득 × 10%

○ 점증율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수준(약 7.19%) 보다 다소 높은 10%로 설정하여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미국도 '75년 시행후 10년간은 점증율을 10%로 유지했으며 '94년 이후부터 점증율을 인상하여 소득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 (최대급여) 80만원

○ 최대급여는 점증구간 상한소득(800만원)과 점증율(10%)의 곱으로 산출됩니다.

▶▶ (점감율) 16%

○ 점감율은 평탄구간 상한소득 1,200만원, 최대적용소득 1,700만원, 최대급여 80만원을 환산하여 16%로 결정되었습니다.

○ 점감구간의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2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개인사업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가족구성원이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구성원의 급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 사실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또한, 임금 지급자와 수령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신고 내용의 진실성 확인과 검증이 곤란합니다.

* 근로자 가구만 적용하고 자영사업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뉴질랜드(Family Tax Credit)의 경우에도 자영사업자인 배우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자영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근로장려세제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당국이 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세무당국이 객관적으로 임금지급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비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사보조원, 자가용 운전원 등)도 규정상으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지출 내역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도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보조원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구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은 이자 ·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총소득 연간 1,700만원미만)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됩니다.

〈예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총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신청자격 있음 •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신청자격 없음

3 근로장려금의 산정

근로장려금 산식

○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① 0 ~ 800만원	근로소득 × 10%
② 800만 ~ 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적용

○ 근로장려금은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장려금 산식에 의한 계산이 복잡하므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구간을 1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EITC Table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발췌)

구 분	부부합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이 상	미 만	
	⋮	⋮	⋮
	100만원	101만원	101천원
	101만원	102만원	102천원
	102만원	103만원	103천원
	⋮	⋮	⋮
	200만원	201만원	201천원
	300만원	301만원	301천원
	400만원	401만원	401천원
	500만원	501만원	501천원
	600만원	601만원	601천원
	700만원	701만원	701천원
	⋮	⋮	⋮
평탄구간	800만원	1,200만원	800천원
	⋮	⋮	⋮
점감구간	1,300만원	1,301만원	640천원
	1,301만원	1,302만원	638천원
	1,302만원	1,303만원	637천원
	⋮	⋮	⋮
	1,400만원	1,401만원	480천원
	1,500만원	1,501만원	320천원
	1,600만원	1,601만원	160천원
	⋮	⋮	⋮

3. 근로장려금의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납부할 소득세액과 상계한 후 나머지를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납부할 소득세액의 다과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 납부할 소득세액이 근로장려금보다 많은 경우

: 근로장려금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소득세액을 납부합니다.

▶ 납부할 소득세액이 근로장려금보다 적은 경우

: 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납부할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 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VI

신청과 지급

1. 신청 및 지급 절차 | 51
2. 불복 절차 | 55
3.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 57

E I T C

VI. 신청과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 절차

근로소득 발생
- 소득세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발생

지급조서 제출
- 고용주는 국세청에 지급조서 제출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근로장려금 신청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5.1-5.31)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명세서 제출

소득 · 재산확인

보정 요구
- 신청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시 신청자에게 보정을 요구

근로장려금 결정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 결정
- 1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부적격 판정시〉

〈적격 판정시〉

근로장려금 지급
-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연 1회, 최대 8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거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지급제한
-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지급제한

1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주의 채택

○ 근로장려세제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인 환급금과 동일하게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적 대면조사를 통해 수혜자를 선정하는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와 함께 직권주의를 가미할 수 있으나

- 직접적 대면조사 없이 조세환급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자의 신청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도 신청자의 신청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정할 수 없고, 아동부양여부, 재산요건 등은 신청자가 정보를 제공해야만 신청자격 구비여부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시기

○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매년 5. 1~ 31)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 신청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의 간소화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아동부양 · 재산조건 등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는 공공기관간 행정자료 공유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 또한, 신청자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사업자가 신고한 신청자의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 부양자녀 기준 관련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 재산 기준 관련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 건축물 대장 등본, 예금 등의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유가증권의 잔고증명서 또는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

○ 한편, 자원봉사단체, 고용지원센터 등 정책대상자와 친밀한 접촉이 가능한 관련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세무경험이 부족한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의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이들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결정

○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후 3월내(매년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지급결정 후 30일 이내에 급여지급 또는 거부 결정을 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3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연장 사유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 · 자료요구 ·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 · 자료요구 ·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지급

○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직접 지급됩니다.

※ 미국, 프랑스에서도 EITC는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므로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2 불복 절차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 적용

○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을 적용합니다.

※ 국세기본법상 불복(제55조)

-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가능

불복청구 절차

▶▶ 청구인 : 근로장려금 신청자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지며,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불복을 청구합니다.

▶▶ 불복청구 대상

– 지급거부, 감액지급, 취소, 경정감액
– 묵시적 거부

▶▶ 청구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다만, 묵시적인 거부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 없음(행정심판법 제18조)

2. 불복 절차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한 민원해결

○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한 민원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민원접수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담당과의 의견과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유무 등 심사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사 결과를 담당과에 통보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 115명)

-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정식 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처리)

- 고충청구는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

3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필요성

○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자들은 대부분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들로서 그동안 소득파악, 소득신고 등 세무행정과는 관계가 적었던 계층입니다.

○ 또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신청자격, 근로소득 산정에 있어 오류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30여년간 EITC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오류 지급액이 EITC 지급액의 3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02년 IRS 조사)

〔미국의 EITC 유형별 과다청구액〕

오 류 유 형	과다청구액(백만달러)
합 계	11,712(100%)
A. 무적격 아동 등재	3,284(28%)
B. 부부합산 신고 기피	2,724(23%)
C. 무적격 아동 등재 및 부부 합산신고 기피	1,984(17%)
D. 과소신고소득	1,494(13%)
E. 확인세무조사기피 등 미확인 오류	2,226(19%)

* 자료 : 미국 재무부 내부자료

3.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유형별 부정수급(오류지급) 방지대책

▶▶ 무자격 아동등재, 부부합산신고 기피

○ 미국의 경우 부정수급 유형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자격 아동등재와 부부합산신고 기피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전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무자격 아동 등재, 부부합산신고 기피 등에 따른 부정수급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오류지급)은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소득과소 · 과대신고

○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신청내역과 사업주의 지급조서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의 과소 · 과대신고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시행초기에는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부정수급 소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 일정기간 지급제한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청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결격사유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고의 · 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한 경우 2년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 소득자료나 기타 증빙서류의 위조 · 변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것입니다.

○ 또한, 대표적인 부정수급유형을 분석하여 이상신고상황을 검색 ·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부정수급액 추징

○ 부정수급하거나 오류로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국세징수법상 취소 · 경정감액결정을 통해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청구합니다.

3.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 이 경우 일반 환급세액징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자상당액(1일당 0.03%)을 추징하게 됩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 추징 이외에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정수급액의 3배 이하의 벌금

VII

향후 추진 과제

1.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 62
2.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 63
3. 제도의 단계적 확대 | 64
4. 복지제도 체계내에서의 근로장려세제 역할 | 65

E I T C

1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제도적 기반 마련

○ '06. 12. 26 국회에서 근로장려세제가 의결된 이후 정부는 근로장려세제의 세부 집행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 · 규칙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 지난 '07. 2. 26에는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 공포되었고, '07. 3. 30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 · 공포되어 근로장려세제의 법령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정차원의 준비

○ 국세청은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필요한 업무설계와 전산시스템의 확충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 또한 세무공무원들이 제도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설치 · 운영하고, 일선관서에서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필요성

○ 근로장려세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제도 내용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 추진방안

○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 여론주도그룹에 대해서는 전문지 기고, 재정경제부 전자메일에 의한 경제정보 전달(PCRM) 서비스 등을 통한 최신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 자원봉사단체, 고용지원센터 등 정책대상자와 친밀한 접촉이 가능한 관련 단체가 세무경험이 부족한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의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이들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Program : VITA)가 있어 저소득층의 EITC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상매체와 인쇄물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제도의 안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제도의 단계적 확대

단계적 확대방안

○ 도입 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우선 적용하되, 향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단계적 확대방안〕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08~'10년)	2단계('11~'13년)	3단계('14년부터)	4단계('30년까지)
적 용 대 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 용 가 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간소요예산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 소득파악 수준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소득파악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근로자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시작, '95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99년 도시자영자, '05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4 복지제도 체계내에서의 근로장려세제 역할

사회안전망의 체계화

○ 그간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했던 차상위 근로빈곤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인 계층)을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대상자 특성별로 특화된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비교〕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
목적	● 노인 ·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근로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장	● 근로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을 노령 ·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내용	●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생계유지 부족 소득을 보충적으로 지원	● 일한만큼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본인이 보험료 일정부담

4. 복지제도 체계내에서의 근로장려세제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각각 기능이 상이합니다.

○ 이와 같이 두 제도는 목적과 지원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두 제도의 발전을 보아가면서 조화로운 기능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선진국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과 극빈층을 위한 지원제도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미국은 EITC와 TANF, 영국은 WTC와 IS 제도 운영)

근로장려세제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100조의 2(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 · 환급한다.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건물 · 자동차 · 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3월 이상 수급한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부양자녀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호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80만원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6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 · 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 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자

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4 · 제126조의5 · 제1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및 제1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7. 2.28 대통령령 제19888호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동법 제186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신탁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8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항제4호의 예금 · 적금 · 부금 및 투자신탁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많은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소득

② 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라 함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많은 자
2.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③ 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수령통장 사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다. 그 밖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에 부양자녀 명세, 재산 명세,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명세 등을 기재하여 근로장려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

자료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0조의6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빙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소득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6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 · 자료요구 ·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 · 자료요구 ·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① 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할 세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2. 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법 제10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법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1(가산세)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00조의12(확인 · 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제100조의14(공공단체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합회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공공단체로서 재경정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②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호적법」에 따른 호적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재산에 관한 과세자료(「지방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의 자료를 포함한다)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 · 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 · 재산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 · 재산 및 급여자료
16.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1조의3제11항 ·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8호

제45조의2(유가증권 등의 범위) ①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주식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 「한국토지공사법」
4.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45조의3(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①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과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②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2.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3. 제4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제45조의4(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영제10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45조의5(증빙자료) 영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거주자의 호적등본(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4.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5. 법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일시 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 · 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 · 지방채 등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45조의6(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 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78호 내지 제8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1.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 : 천원)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0초과	10	1	500	510	51	1,000	1,010	11	1,500	1,510	151
10	20	2	510	520	52	1,010	1,020	102	1,510	1,520	152
20	30	3	520	530	53	1,020	1,030	103	1,520	1,530	153
30	40	4	530	540	54	1,030	1,040	104	1,530	1,540	154
40	50	5	540	550	55	1,040	1,050	105	1,540	1,550	155
50	60	6	550	560	56	1,050	1,060	106	1,550	1,560	156
60	70	7	560	570	57	1,060	1,070	107	1,560	1,570	157
70	80	8	570	580	58	1,070	1,080	108	1,570	1,580	158
80	90	9	580	590	59	1,080	1,090	109	1,580	1,590	159
90	100	10	590	600	60	1,090	1,100	110	1,590	1,600	160
100	110	11	600	610	61	1,100	1,110	111	1,600	1,610	161
110	120	12	610	620	62	1,110	1,120	112	1,610	1,620	162
120	130	13	620	630	63	1,120	1,130	113	1,620	1,630	163
130	140	14	630	640	64	1,130	1,140	114	1,630	1,640	164
140	150	15	640	650	65	1,140	1,150	115	1,640	1,650	165
150	160	16	650	660	66	1,150	1,160	116	1,650	1,660	166
160	170	17	660	670	67	1,160	1,170	117	1,660	1,670	167
170	180	18	670	680	68	1,170	1,180	118	1,670	1,680	168
180	190	19	680	690	69	1,180	1,190	119	1,680	1,690	169
190	200	20	690	700	70	1,190	1,200	120	1,690	1,700	170
200	210	21	700	710	71	1,200	1,210	121	1,700	1,710	171
210	220	22	710	720	72	1,210	1,220	122	1,710	1,720	172
220	230	23	720	730	73	1,220	1,230	123	1,720	1,730	173
230	240	24	730	740	74	1,230	1,240	124	1,730	1,740	174
240	250	25	740	750	75	1,240	1,250	125	1,740	1,750	175
250	260	26	750	760	76	1,250	1,260	126	1,750	1,760	176
260	270	27	760	770	77	1,260	1,270	127	1,760	1,770	177
270	280	28	770	780	78	1,270	1,280	128	1,770	1,780	178
280	290	29	780	790	79	1,280	1,290	129	1,780	1,790	179
290	300	30	790	800	80	1,290	1,300	130	1,790	1,800	180
300	310	31	800	810	81	1,300	1,310	131	1,800	1,810	181
310	320	32	810	820	82	1,310	1,320	132	1,810	1,820	182
320	330	33	820	830	83	1,320	1,330	133	1,820	1,830	183
330	340	34	830	840	84	1,330	1,340	134	1,830	1,840	184
340	350	35	840	850	85	1,340	1,350	135	1,840	1,850	185
350	360	36	850	860	86	1,350	1,360	136	1,850	1,860	186
360	370	37	860	870	87	1,360	1,370	137	1,860	1,870	187
370	380	38	870	880	88	1,370	1,380	138	1,870	1,880	188
380	390	39	880	890	89	1,380	1,390	139	1,880	1,890	189
390	400	40	890	900	90	1,390	1,400	140	1,890	1,900	190
400	410	41	900	910	91	1,400	1,410	141	1,900	1,910	191
410	420	42	910	920	92	1,410	1,420	142	1,910	1,920	192
420	430	43	920	930	93	1,420	1,430	143	1,920	1,930	193
430	440	44	930	940	94	1,430	1,440	144	1,930	1,940	194
440	450	45	940	950	95	1,440	1,450	145	1,940	1,950	195
450	460	46	950	960	96	1,450	1,460	146	1,950	1,960	196
460	470	47	960	970	97	1,460	1,470	147	1,960	1,970	197
470	480	48	970	980	98	1,470	1,480	148	1,970	1,980	198
480	490	49	980	990	99	1,480	1,490	149	1,980	1,990	199
490	500	50	990	1,000	100	1,490	1,500	150	1,990	2,000	200

(단위 : 천원)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2,000	2,010	201	2,500	2,510	251	3,000	3,010	301	3,500	3,510	351
2,010	2,020	202	2,510	2,520	252	3,010	3,020	302	3,510	3,520	352
2,020	2,030	203	2,520	2,530	253	3,020	3,030	303	3,520	3,530	353
2,030	2,040	204	2,530	2,540	254	3,030	3,040	304	3,530	3,540	354
2,040	2,050	205	2,540	2,550	255	3,040	3,050	305	3,540	3,550	355
2,050	2,060	206	2,550	2,560	256	3,050	3,060	306	3,550	3,560	356
2,060	2,070	207	2,560	2,570	257	3,060	3,070	307	3,560	3,570	357
2,070	2,080	208	2,570	2,580	258	3,070	3,080	308	3,570	3,580	358
2,080	2,090	209	2,580	2,590	259	3,080	3,090	309	3,580	3,590	359
2,090	2,100	210	2,590	2,600	260	3,090	3,100	310	3,590	3,600	360
2,100	2,110	211	2,600	2,610	261	3,100	3,110	311	3,600	3,610	361
2,110	2,120	212	2,610	2,620	262	3,110	3,120	312	3,610	3,620	362
2,120	2,130	213	2,620	2,630	263	3,120	3,130	313	3,620	3,630	363
2,130	2,140	214	2,630	2,640	264	3,130	3,140	314	3,630	3,640	364
2,140	2,150	215	2,640	2,650	265	3,140	3,150	315	3,640	3,650	365
2,150	2,160	216	2,650	2,660	266	3,150	3,160	316	3,650	3,660	366
2,160	2,170	217	2,660	2,670	267	3,160	3,170	317	3,660	3,670	367
2,170	2,180	218	2,670	2,680	268	3,170	3,180	318	3,670	3,680	368
2,180	2,190	219	2,680	2,690	269	3,180	3,190	319	3,680	3,690	369
2,190	2,200	220	2,690	2,700	270	3,190	3,200	320	3,690	3,700	370
2,200	2,210	221	2,700	2,710	271	3,200	3,210	321	3,700	3,710	371
2,210	2,220	222	2,710	2,720	272	3,210	3,220	322	3,710	3,720	372
2,220	2,230	223	2,720	2,730	273	3,220	3,230	323	3,720	3,730	373
2,230	2,240	224	2,730	2,740	274	3,230	3,240	324	3,730	3,740	374
2,240	2,250	225	2,740	2,750	275	3,240	3,250	325	3,740	3,750	375
2,250	2,260	226	2,750	2,760	276	3,250	3,260	326	3,750	3,760	376
2,260	2,270	227	2,760	2,770	277	3,260	3,270	327	3,760	3,770	377
2,270	2,280	228	2,770	2,780	278	3,270	3,280	328	3,770	3,780	378
2,280	2,290	229	2,780	2,790	279	3,280	3,290	329	3,780	3,790	379
2,290	2,300	230	2,790	2,800	280	3,290	3,300	330	3,790	3,800	380
2,300	2,310	231	2,800	2,810	281	3,300	3,310	331	3,800	3,810	381
2,310	2,320	232	2,810	2,820	282	3,310	3,320	332	3,810	3,820	382
2,320	2,330	233	2,820	2,830	283	3,320	3,330	333	3,820	3,830	383
2,330	2,340	234	2,830	2,840	284	3,330	3,340	334	3,830	3,840	384
2,340	2,350	235	2,840	2,850	285	3,340	3,350	335	3,840	3,850	385
2,350	2,360	236	2,850	2,860	286	3,350	3,360	336	3,850	3,860	386
2,360	2,370	237	2,860	2,870	287	3,360	3,370	337	3,860	3,870	387
2,370	2,380	238	2,870	2,880	288	3,370	3,380	338	3,870	3,880	388
2,380	2,390	239	2,880	2,890	289	3,380	3,390	339	3,880	3,890	389
2,390	2,400	240	2,890	2,900	290	3,390	3,400	340	3,890	3,900	390
2,400	2,410	241	2,900	2,910	291	3,400	3,410	341	3,900	3,910	391
2,410	2,420	242	2,910	2,920	292	3,410	3,420	342	3,910	3,920	392
2,420	2,430	243	2,920	2,930	293	3,420	3,430	343	3,920	3,930	393
2,430	2,440	244	2,930	2,940	294	3,430	3,440	344	3,930	3,940	394
2,440	2,450	245	2,940	2,950	295	3,440	3,450	345	3,940	3,950	395
2,450	2,460	246	2,950	2,960	296	3,450	3,460	346	3,950	3,960	396
2,460	2,470	247	2,960	2,970	297	3,460	3,470	347	3,960	3,970	397
2,470	2,480	248	2,970	2,980	298	3,470	3,480	348	3,970	3,980	398
2,480	2,490	249	2,980	2,990	299	3,480	3,490	349	3,980	3,990	399
2,490	2,500	250	2,990	3,000	300	3,490	3,500	350	3,990	4,000	400

(단위 : 천원)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4,000	4,010	401	4,500	4,510	451	5,000	5,010	501	5,500	5,510	551
4,010	4,020	402	4,510	4,520	452	5,010	5,020	502	5,510	5,520	552
4,020	4,030	403	4,520	4,530	453	5,020	5,030	503	5,520	5,530	553
4,030	4,040	404	4,530	4,540	454	5,030	5,040	504	5,530	5,540	554
4,040	4,050	405	4,540	4,550	455	5,040	5,050	505	5,540	5,550	555
4,050	4,060	406	4,550	4,560	456	5,050	5,060	506	5,550	5,560	556
4,060	4,070	407	4,560	4,570	457	5,060	5,070	507	5,560	5,570	557
4,070	4,080	408	4,570	4,580	458	5,070	5,080	508	5,570	5,580	558
4,080	4,090	409	4,580	4,590	459	5,080	5,090	509	5,580	5,590	559
4,090	4,100	410	4,590	4,600	460	5,090	5,100	510	5,590	5,600	560
4,100	4,110	411	4,600	4,610	461	5,100	5,110	511	5,600	5,610	561
4,110	4,120	412	4,610	4,620	462	5,110	5,120	512	5,610	5,620	562
4,120	4,130	413	4,620	4,630	463	5,120	5,130	513	5,620	5,630	563
4,130	4,140	414	4,630	4,640	464	5,130	5,140	514	5,630	5,640	564
4,140	4,150	415	4,640	4,650	465	5,140	5,150	515	5,640	5,650	565
4,150	4,160	416	4,650	4,660	466	5,150	5,160	516	5,650	5,660	566
4,160	4,170	417	4,660	4,670	467	5,160	5,170	517	5,660	5,670	567
4,170	4,180	418	4,670	4,680	468	5,170	5,180	518	5,670	5,680	568
4,180	4,190	419	4,680	4,690	469	5,180	5,190	519	5,680	5,690	569
4,190	4,200	420	4,690	4,700	470	5,190	5,200	520	5,690	5,700	570
4,200	4,210	421	4,700	4,710	471	5,200	5,210	521	5,700	5,710	571
4,210	4,220	422	4,710	4,720	472	5,210	5,220	522	5,710	5,720	572
4,220	4,230	423	4,720	4,730	473	5,220	5,230	523	5,720	5,730	573
4,230	4,240	424	4,730	4,740	474	5,230	5,240	524	5,730	5,740	574
4,240	4,250	425	4,740	4,750	475	5,240	5,250	525	5,740	5,750	575
4,250	4,260	426	4,750	4,760	476	5,250	5,260	526	5,750	5,760	576
4,260	4,270	427	4,760	4,770	477	5,260	5,270	527	5,760	5,770	577
4,270	4,280	428	4,770	4,780	478	5,270	5,280	528	5,770	5,780	578
4,280	4,290	429	4,780	4,790	479	5,280	5,290	529	5,780	5,790	579
4,290	4,300	430	4,790	4,800	480	5,290	5,300	530	5,790	5,800	580
4,300	4,310	431	4,800	4,810	481	5,300	5,310	531	5,800	5,810	581
4,310	4,320	432	4,810	4,820	482	5,310	5,320	532	5,810	5,820	582
4,320	4,330	433	4,820	4,830	483	5,320	5,330	533	5,820	5,830	583
4,330	4,340	434	4,830	4,840	484	5,330	5,340	534	5,830	5,840	584
4,340	4,350	435	4,840	4,850	485	5,340	5,350	535	5,840	5,850	585
4,350	4,360	436	4,850	4,860	486	5,350	5,360	536	5,850	5,860	586
4,360	4,370	437	4,860	4,870	487	5,360	5,370	537	5,860	5,870	587
4,370	4,380	438	4,870	4,880	488	5,370	5,380	538	5,870	5,880	588
4,380	4,390	439	4,880	4,890	489	5,380	5,390	539	5,880	5,890	589
4,390	4,400	440	4,890	4,900	490	5,390	5,400	540	5,890	5,900	590
4,400	4,410	441	4,900	4,910	491	5,400	5,410	541	5,900	5,910	591
4,410	4,420	442	4,910	4,920	492	5,410	5,420	542	5,910	5,920	592
4,420	4,430	443	4,920	4,930	493	5,420	5,430	543	5,920	5,930	593
4,430	4,440	444	4,930	4,940	494	5,430	5,440	544	5,930	5,940	594
4,440	4,450	445	4,940	4,950	495	5,440	5,450	545	5,940	5,950	595
4,450	4,460	446	4,950	4,960	496	5,450	5,460	546	5,950	5,960	596
4,460	4,470	447	4,960	4,970	497	5,460	5,470	547	5,960	5,970	597
4,470	4,480	448	4,970	4,980	498	5,470	5,480	548	5,970	5,980	598
4,480	4,490	449	4,980	4,990	499	5,480	5,490	549	5,980	5,990	599
4,490	4,500	450	4,990	5,000	500	5,490	5,500	550	5,990	6,000	600

(단위 : 천원)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6,000	6,010	601	6,500	6,510	651	7,000	7,010	701	7,500	7,510	751
6,010	6,020	602	6,510	6,520	652	7,010	7,020	702	7,510	7,520	752
6,020	6,030	603	6,520	6,530	653	7,020	7,030	703	7,520	7,530	753
6,030	6,040	604	6,530	6,540	654	7,030	7,040	704	7,530	7,540	754
6,040	6,050	605	6,540	6,550	655	7,040	7,050	705	7,540	7,550	755
6,050	6,060	606	6,550	6,560	656	7,050	7,060	706	7,550	7,560	756
6,060	6,070	607	6,560	6,570	657	7,060	7,070	707	7,560	7,570	757
6,070	6,080	608	6,570	6,580	658	7,070	7,080	708	7,570	7,580	758
6,080	6,090	609	6,580	6,590	659	7,080	7,090	709	7,580	7,590	759
6,090	6,100	610	6,590	6,600	660	7,090	7,100	710	7,590	7,600	760
6,100	6,110	611	6,600	6,610	661	7,100	7,110	711	7,600	7,610	761
6,110	6,120	612	6,610	6,620	662	7,110	7,120	712	7,610	7,620	762
6,120	6,130	613	6,620	6,630	663	7,120	7,130	713	7,620	7,630	763
6,130	6,140	614	6,630	6,640	664	7,130	7,140	714	7,630	7,640	764
6,140	6,150	615	6,640	6,650	665	7,140	7,150	715	7,640	7,650	765
6,150	6,160	616	6,650	6,660	666	7,150	7,160	716	7,650	7,660	766
6,160	6,170	617	6,660	6,670	667	7,160	7,170	717	7,660	7,670	767
6,170	6,180	618	6,670	6,680	668	7,170	7,180	718	7,670	7,680	768
6,180	6,190	619	6,680	6,690	669	7,180	7,190	719	7,680	7,690	769
6,190	6,200	620	6,690	6,700	670	7,190	7,200	720	7,690	7,700	770
6,200	6,210	621	6,700	6,710	671	7,200	7,210	721	7,700	7,710	771
6,210	6,220	622	6,710	6,720	672	7,210	7,220	722	7,710	7,720	772
6,220	6,230	623	6,720	6,730	673	7,220	7,230	723	7,720	7,730	773
6,230	6,240	624	6,730	6,740	674	7,230	7,240	724	7,730	7,740	774
6,240	6,250	625	6,740	6,750	675	7,240	7,250	725	7,740	7,750	775
6,250	6,260	626	6,750	6,760	676	7,250	7,260	726	7,750	7,760	776
6,260	6,270	627	6,760	6,770	677	7,260	7,270	727	7,760	7,770	777
6,270	6,280	628	6,770	6,780	678	7,270	7,280	728	7,770	7,780	778
6,280	6,290	629	6,780	6,790	679	7,280	7,290	729	7,780	7,790	779
6,290	6,300	630	6,790	6,800	680	7,290	7,300	730	7,790	7,800	780
6,300	6,310	631	6,800	6,810	681	7,300	7,310	731	7,800	7,810	781
6,310	6,320	632	6,810	6,820	682	7,310	7,320	732	7,810	7,820	782
6,320	6,330	633	6,820	6,830	683	7,320	7,330	733	7,820	7,830	783
6,330	6,340	634	6,830	6,840	684	7,330	7,340	734	7,830	7,840	784
6,340	6,350	635	6,840	6,850	685	7,340	7,350	735	7,840	7,850	785
6,350	6,360	636	6,850	6,860	686	7,350	7,360	736	7,850	7,860	786
6,360	6,370	637	6,860	6,870	687	7,360	7,370	737	7,860	7,870	787
6,370	6,380	638	6,870	6,880	688	7,370	7,380	738	7,870	7,880	788
6,380	6,390	639	6,880	6,890	689	7,380	7,390	739	7,880	7,890	789
6,390	6,400	640	6,890	6,900	690	7,390	7,400	740	7,890	7,900	790
6,400	6,410	641	6,900	6,910	691	7,400	7,410	741	7,900	7,910	791
6,410	6,420	642	6,910	6,920	692	7,410	7,420	742	7,910	7,920	792
6,420	6,430	643	6,920	6,930	693	7,420	7,430	743	7,920	7,930	793
6,430	6,440	644	6,930	6,940	694	7,430	7,440	744	7,930	7,940	794
6,440	6,450	645	6,940	6,950	695	7,440	7,450	745	7,940	7,950	795
6,450	6,460	646	6,950	6,960	696	7,450	7,460	746	7,950	7,960	796
6,460	6,470	647	6,960	6,970	697	7,460	7,470	747	7,960	7,970	797
6,470	6,480	648	6,970	6,980	698	7,470	7,480	748	7,970	7,980	798
6,480	6,490	649	6,980	6,990	699	7,480	7,490	749	7,980	7,990	799
6,490	6,500	650	6,990	7,000	700	7,490	7,500	750	7,990	8,000	800

2.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 : 천원)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이 상	미 만	
8,000	12,000	800

3.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 : 천원)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2,000	12,010	800	12,350	12,360	744	12,700	12,710	688	13,050	13,060	632
12,010	12,020	798	12,360	12,370	742	12,710	12,720	686	13,060	13,070	630
12,020	12,030	797	12,370	12,380	741	12,720	12,730	685	13,070	13,080	629
12,030	12,040	795	12,380	12,390	739	12,730	12,740	683	13,080	13,090	627
12,040	12,050	794	12,390	12,400	738	12,740	12,750	682	13,090	13,100	626
12,050	12,060	792	12,400	12,410	736	12,750	12,760	680	13,100	13,110	624
12,060	12,070	790	12,410	12,420	734	12,760	12,770	678	13,110	13,120	622
12,070	12,080	789	12,420	12,430	733	12,770	12,780	677	13,120	13,130	621
12,080	12,090	787	12,430	12,440	731	12,780	12,790	675	13,130	13,140	619
12,090	12,100	786	12,440	12,450	730	12,790	12,800	674	13,140	13,150	618
12,100	12,110	784	12,450	12,460	728	12,800	12,810	672	13,150	13,160	616
12,110	12,120	782	12,460	12,470	726	12,810	12,820	670	13,160	13,170	614
12,120	12,130	781	12,470	12,480	725	12,820	12,830	669	13,170	13,180	613
12,130	12,140	779	12,480	12,490	723	12,830	12,840	667	13,180	13,190	611
12,140	12,150	778	12,490	12,500	722	12,840	12,850	666	13,190	13,200	610
12,150	12,160	776	12,500	12,510	720	12,850	12,860	664	13,200	13,210	608
12,160	12,170	774	12,510	12,520	718	12,860	12,870	662	13,210	13,220	606
12,170	12,180	773	12,520	12,530	717	12,870	12,880	661	13,220	13,230	605
12,180	12,190	771	12,530	12,540	715	12,880	12,890	659	13,230	13,240	603
12,190	12,200	770	12,540	12,550	714	12,890	12,900	658	13,240	13,250	602
12,200	12,210	768	12,550	12,560	712	12,900	12,910	656	13,250	13,260	600
12,210	12,220	766	12,560	12,570	710	12,910	12,920	654	13,260	13,270	598
12,220	12,230	765	12,570	12,580	709	12,920	12,930	653	13,270	13,280	597
12,230	12,240	763	12,580	12,590	707	12,930	12,940	651	13,280	13,290	595
12,240	12,250	762	12,590	12,600	706	12,940	12,950	650	13,290	13,300	594
12,250	12,260	760	12,600	12,610	704	12,950	12,960	648	13,300	13,310	592
12,260	12,270	758	12,610	12,620	702	12,960	12,970	646	13,310	13,320	590
12,270	12,280	757	12,620	12,630	701	12,970	12,980	645	13,320	13,330	589
12,280	12,290	755	12,630	12,640	699	12,980	12,990	643	13,330	13,340	587
12,290	12,300	754	12,640	12,650	698	12,990	13,000	642	13,340	13,350	586
12,300	12,310	752	12,650	12,660	696	13,000	13,010	640	13,350	13,360	584
12,310	12,320	750	12,660	12,670	694	13,010	13,020	638	13,360	13,370	582
12,320	12,330	749	12,670	12,680	693	13,020	13,030	637	13,370	13,380	581
12,330	12,340	747	12,680	12,690	691	13,030	13,040	635	13,380	13,390	579
12,340	12,350	746	12,690	12,700	690	13,040	13,050	634	13,390	13,400	578

(단위 : 천원)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3,400	13,410	576	13,850	13,860	504	14,300	14,310	432	14,750	14,760	360
13,410	13,420	574	13,860	13,870	502	14,310	14,320	430	14,760	14,770	358
13,420	13,430	573	13,870	13,880	501	14,320	14,330	429	14,770	14,780	357
13,430	13,440	571	13,880	13,890	499	14,330	14,340	427	14,780	14,790	355
13,440	13,450	570	13,890	13,900	498	14,340	14,350	426	14,790	14,800	354
13,450	13,460	568	13,900	13,910	496	14,350	14,360	424	14,800	14,810	352
13,460	13,470	566	13,910	13,920	494	14,360	14,370	422	14,810	14,820	350
13,470	13,480	565	13,920	13,930	493	14,370	14,380	421	14,820	14,830	349
13,480	13,490	563	13,930	13,940	491	14,380	14,390	419	14,830	14,840	347
13,490	13,500	562	13,940	13,950	490	14,390	14,400	418	14,840	14,850	346
13,500	13,510	560	13,950	13,960	488	14,400	14,410	416	14,850	14,860	344
13,510	13,520	558	13,960	13,970	486	14,410	14,420	414	14,860	14,870	342
13,520	13,530	557	13,970	13,980	485	14,420	14,430	413	14,870	14,880	341
13,530	13,540	555	13,980	13,990	483	14,430	14,440	411	14,880	14,890	339
13,540	13,550	554	13,990	14,000	482	14,440	14,450	410	14,890	14,900	338
13,550	13,560	552	14,000	14,010	480	14,450	14,460	408	14,900	14,910	336
13,560	13,570	550	14,010	14,020	478	14,460	14,470	406	14,910	14,920	334
13,570	13,580	549	14,020	14,030	477	14,470	14,480	405	14,920	14,930	333
13,580	13,590	547	14,030	14,040	475	14,480	14,490	403	14,930	14,940	331
13,590	13,600	546	14,040	14,050	474	14,490	14,500	402	14,940	14,950	330
13,600	13,610	544	14,050	14,060	472	14,500	14,510	400	14,950	14,960	328
13,610	13,620	542	14,060	14,070	470	14,510	14,520	398	14,960	14,970	326
13,620	13,630	541	14,070	14,080	469	14,520	14,530	397	14,970	14,980	325
13,630	13,640	539	14,080	14,090	467	14,530	14,540	395	14,980	14,990	323
13,640	13,650	538	14,090	14,100	466	14,540	14,550	394	14,990	15,000	322
13,650	13,660	536	14,100	14,110	464	14,550	14,560	392	15,000	15,010	320
13,660	13,670	534	14,110	14,120	462	14,560	14,570	390	15,010	15,020	318
13,670	13,680	533	14,120	14,130	461	14,570	14,580	389	15,020	15,030	317
13,680	13,690	531	14,130	14,140	459	14,580	14,590	387	15,030	15,040	315
13,690	13,700	530	14,140	14,150	458	14,590	14,600	386	15,040	15,050	314
13,700	13,710	528	14,150	14,160	456	14,600	14,610	384	15,050	15,060	312
13,710	13,720	526	14,160	14,170	454	14,610	14,620	382	15,060	15,070	310
13,720	13,730	525	14,170	14,180	453	14,620	14,630	381	15,070	15,080	309
13,730	13,740	523	14,180	14,190	451	14,630	14,640	379	15,080	15,090	307
13,740	13,750	522	14,190	14,200	450	14,640	14,650	378	15,090	15,100	306
13,750	13,760	520	14,200	14,210	448	14,650	14,660	376	15,100	15,110	304
13,760	13,770	518	14,210	14,220	446	14,660	14,670	374	15,110	15,120	302
13,770	13,780	517	14,220	14,230	445	14,670	14,680	373	15,120	15,130	301
13,780	13,790	515	14,230	14,240	443	14,680	14,690	371	15,130	15,140	299
13,790	13,800	514	14,240	14,250	442	14,690	14,700	370	15,140	15,150	298
13,800	13,810	512	14,250	14,260	440	14,700	14,710	368	15,150	15,160	296
13,810	13,820	510	14,260	14,270	438	14,710	14,720	366	15,160	15,170	294
13,820	13,830	509	14,270	14,280	437	14,720	14,730	365	15,170	15,180	293
13,830	13,840	507	14,280	14,290	435	14,730	14,740	363	15,180	15,190	291
13,840	13,850	506	14,290	14,300	434	14,740	14,750	362	15,190	15,200	290

(단위 : 천원)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5,200	15,210	288	15,650	15,660	216	16,100	16,110	144	16,550	16,560	72
15,210	15,220	286	15,660	15,670	214	16,110	16,120	142	16,560	16,570	70
15,220	15,230	285	15,670	15,680	213	16,120	16,130	141	16,570	16,580	69
15,230	15,240	283	15,680	15,690	211	16,130	16,140	139	16,580	16,590	67
15,240	15,250	282	15,690	15,700	210	16,140	16,150	138	16,590	16,600	66
15,250	15,260	280	15,700	15,710	208	16,150	16,160	136	16,600	16,610	64
15,260	15,270	278	15,710	15,720	206	16,160	16,170	134	16,610	16,620	62
15,270	15,280	277	15,720	15,730	205	16,170	16,180	133	16,620	16,630	61
15,280	15,290	275	15,730	15,740	203	16,180	16,190	131	16,630	16,640	59
15,290	15,300	274	15,740	15,750	202	16,190	16,200	130	16,640	16,650	58
15,300	15,310	272	15,750	15,760	200	16,200	16,210	128	16,650	16,660	56
15,310	15,320	270	15,760	15,770	198	16,210	16,220	126	16,660	16,670	54
15,320	15,330	269	15,770	15,780	197	16,220	16,230	125	16,670	16,680	53
15,330	15,340	267	15,780	15,790	195	16,230	16,240	123	16,680	16,690	51
15,340	15,350	266	15,790	15,800	194	16,240	16,250	122	16,690	16,700	50
15,350	15,360	264	15,800	15,810	192	16,250	16,260	120	16,700	16,710	48
15,360	15,370	262	15,810	15,820	190	16,260	16,270	118	16,710	16,720	46
15,370	15,380	261	15,820	15,830	189	16,270	16,280	117	16,720	16,730	45
15,380	15,390	259	15,830	15,840	187	16,280	16,290	115	16,730	16,740	43
15,390	15,400	258	15,840	15,850	186	16,290	16,300	114	16,740	16,750	42
15,400	15,410	256	15,850	15,860	184	16,300	16,310	112	16,750	16,760	40
15,410	15,420	254	15,860	15,870	182	16,310	16,320	110	16,760	16,770	38
15,420	15,430	253	15,870	15,880	181	16,320	16,330	109	16,770	16,780	37
15,430	15,440	251	15,880	15,890	179	16,330	16,340	107	16,780	16,790	35
15,440	15,450	250	15,890	15,900	178	16,340	16,350	106	16,790	16,800	34
15,450	15,460	248	15,900	15,910	176	16,350	16,360	104	16,800	16,810	32
15,460	15,470	246	15,910	15,920	174	16,360	16,370	102	16,810	16,820	30
15,470	15,480	245	15,920	15,930	173	16,370	16,380	101	16,820	16,830	29
15,480	15,490	243	15,930	15,940	171	16,380	16,390	99	16,830	16,840	27
15,490	15,500	242	15,940	15,950	170	16,390	16,400	98	16,840	16,850	26
15,500	15,510	240	15,950	15,960	168	16,400	16,410	96	16,850	16,860	24
15,510	15,520	238	15,960	15,970	166	16,410	16,420	94	16,860	16,870	22
15,520	15,530	237	15,970	15,980	165	16,420	16,430	93	16,870	16,880	21
15,530	15,540	235	15,980	15,990	163	16,430	16,440	91	16,880	16,890	19
15,540	15,550	234	15,990	16,000	162	16,440	16,450	90	16,890	16,900	18
15,550	15,560	232	16,000	16,010	160	16,450	16,460	88	16,900	16,910	16
15,560	15,570	230	16,010	16,020	158	16,460	16,470	86	16,910	16,920	14
15,570	15,580	229	16,020	16,030	157	16,470	16,480	85	16,920	16,930	13
15,580	15,590	227	16,030	16,040	155	16,480	16,490	83	16,930	16,940	11
15,590	15,600	226	16,040	16,050	154	16,490	16,500	82	16,940	16,950	10
15,600	15,610	224	16,050	16,060	152	16,500	16,510	80	16,950	16,960	8
15,610	15,620	222	16,060	16,070	150	16,510	16,520	78	16,960	16,970	6
15,620	15,630	221	16,070	16,080	149	16,520	16,530	77	16,970	16,980	5
15,630	15,640	219	16,080	16,090	147	16,530	16,540	75	16,980	16,990	3
15,640	15,650	218	16,090	16,100	146	16,540	16,550	74	16,990	17,000	2

근로장려세제 관련 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 (제1쪽)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작성순서 및 작성방법〉

1. 이 서식 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신청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가. ❶기본사항란에 신청자 본인의 인적사항, 주소, 주소지의 전화(또는 휴대전화), 전자우편의 주소를 각각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❷신청자격 관련 사항란을 기재합니다.
      - ⑦부양자녀 수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별지 제64호의3서식)의 ⑥부양자녀 수란의 숫자를 기재합니다.
      - ⑧연간 총급여액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의 ⑮연간 총급여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⑨연간 총소득금액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의 ㉔연간 총소득금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⑩총재산가액란 :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의 ㊷총재산가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❸근로장려금 신청금액란을 기재합니다.
      - ⑪근로장려금 신청금액란 :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⑧연간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기재합니다.
   라. ❹근로장려금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기재합니다(근로장려금을 송금받을 신청자의 금융 기관명과 예금계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작성합니다.
3. 각 서식에서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증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성 명		주 소	

※ 구비서류

1.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　)	6. 자동차등록증 사본	(　)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7.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　)
3. 급여수령통장 사본	(　)	8.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　)
4.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　)	9. 주식 또는 국채등의 잔고증명서	(　)
5.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	10. 그 밖의 첨부서류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10㎜×297㎜(신문용지 54g/㎡)

(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

◇ 이 검토표는 귀하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모두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지난 해에 부부 중에서 1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 다만, 개인사업자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 예	□ 아니요
②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2명 이상 있습니까?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형제 · 자매,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형제 · 자매, 손자녀가 부양자녀에 해당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만 18세 미만)에 관계 없이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 예	□ 아니요
③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포함)이 1,700만원 미만 입니까? - 총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 예	□ 아니요
④ 지난 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입니까?	□ 예	□ 아니요
⑤ 지난 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와 세대원이 보유한 아래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입니까? - 임차한 주택 · 상가 등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부동산(토지 · 건축물) : 지방세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지방세 시가표준액 - 세대원 개인별로 5백만원 이상 예금 · 적금 · 부금 · 투자신탁 등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 세대원 개인별로 5백만원 이상 주식 · 채권 등 유가증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지난 해 6월 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또는 채권은 액면가액 - 골프장회원권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액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 평가금액	□ 예	□ 아니요
⑥ 귀하는 지난 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거나, 수급받은 경우라도 수급기간이 2개월 이하입니까?	□ 예	□ 아니요
⑦ 귀하 또는 배우자가 지난 해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시겠습니까? -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	□ 아니요

210㎜ × 297㎜(신문용지 54g/㎡)

(제3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 이 서식 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에 의하여 신청자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❶ 기본사항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도 · 시	구 · 군	동 · 읍 · 면	가 · 리	번지	호	아파트 · 연립 등	동	호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휴대전화 번호				⑥전자우편 주소			

※ 아래 ⑦란 내지 ⑫란은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기재합니다.

❷ 신청자격 관련사항			
⑦ 부양자녀 수 (만 18세 미만 자녀 등)	명	⑧ 연간 총급여액(부부 합산)	원
⑨ 연간 총소득금액(부부 합산)	명	⑩ 총재산가액(세대원 전원)	만원

❸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⑪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원

❹ 근로장려금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 체신관서명	⑬ 계좌번호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청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일자

※ 첨부서류 : 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3서식] (제1쪽)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작성방법

❶ 세대원 및 부양자녀 명세

(※ 세대원 및 부양자녀는 지난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❶세대원 및 부양자녀 명세는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형제 · 자매, 손자녀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기재순서 : 본인→배우자→자녀→형제 · 자매→손자녀).
2. ①관계란 :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3. ④부양자녀 여부란 :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으로 표기합니다.
   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인 자녀와 동거 입양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습니다)
   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 · 자매, 손자녀
4. ⑤비고란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여부, 형제 · 자매,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5. ⑥부양자녀 수란 : ④란의 해당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❷ 근로소득 명세

6. ⑦신청인(주된 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⑪배우자의 근로소득란은 급여 지급자별(⑧, ⑫)로 각각 기재하되, 총급여액(⑨, ⑬)은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을 기재합니다.
7.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❸ 총소득금액 명세

8. 신청자 및 배우자의 이자소득(총수입금액), 배당소득(총수입금액), 부동산임대소득(필요경비를 차감한 총수입금액), 사업소득(필요경비를 차감한 총수입금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연금소득(과세제외 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각각 기재하되,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나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
9. ⑳란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은 ❷근로소득명세의 ⑮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❶ 세대원 및 부양자녀 명세

①관계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부양자녀 여부	비 고
본인				
⑥부양자녀 수			명	

❷ 근로소득 명세

⑦신청인(주된 소득자)의 근로소득		⑪배우자의 근로소득	
⑧급여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⑨총급여액	⑫급여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⑬총급여액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⑩합 계 액	원	⑭합 계 액	원
⑮연간 총급여액 (⑩ + ⑭)			

❸ 총소득금액 명세

소 득 구 분	신 청 인	배우자
⑯이자소득(총수입금액)	원	원
⑰배당소득(총수입금액)	원	원
⑱부동산임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원	원
⑲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원	원
⑳근로소득(총급여액)	원	원
㉑연금소득(총수입금액)	원	원
㉒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원	원
㉓합계액 (⑯+⑰+⑱+⑲+⑳+㉑+㉒)	원	원
㉔연간 총소득금액(㉓란의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계액)	원	

210㎜×297㎜(신문용지 54g/㎡)

(제3쪽)

❹ 재산 명세 (※ 모든 재산은 지난 해 6월 1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	
가. 토지 · 건축물	1. ①소유자 · ②주민등록번호 · ③종류 · ④소재지 · ⑤면적란 : 각각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⑥가액란 :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나. 전세금 · 임차보증금	3. ⑧임차인 · ⑨주민등록번호란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⑩종류란 :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 상가, 오피스텔, 토지, 기타 등으로 기재합니다. 5. ⑪소재지란 : 등기부등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6. ⑭전세금(보증금)란 :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금,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다. 승용자동차(영업용 자동차 제외)	7.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기재합니다. 8. ㉓가액란 :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라.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 투자신탁 등 금융재산	9. 본인 및 세대원 개인별로 보유한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 투자신탁 등 금융재산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모든 금융재산을 기재합니다. 다만, 금융재산 계좌별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마.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10. 본인 및 세대원 개인별로 보유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모든 유가증권을 기재합니다. 다만, 유가증권 종목별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1. ㉝ 유가증권종류란 : 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국채, 공채, 회사채) 등으로 기재합니다. 12. ㊱ 가액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지난 해 6월 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채권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합니다.
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13.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상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종류, 분양회사 등을 기재합니다. 14. ㊶ 종류란 :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 상가, 오피스텔, 토지, 기타 등으로 기재합니다. 15. ㊸ 평가금액란 : 다음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 분양권: 지난 해 6월 1일 현재 불입한 금액 - 입주권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또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토지상환채권 · 주택상환사채 : 액면가액
사. 골프장회원권	16. 골프회원권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합니다. 17. ㊽ 회원권 종류란 : 일반회원, 특별회원, 우대회원, 주중회원, 주중가족, VIP, 플러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8. ㊿ 가액란 : 지난 해 6월 1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재합니다.
총재산가액	19. ㊷ 총재산가액란은 ⑦+⑮+㉔+㉚+㊲+㊹+㊿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제4쪽)

❹ 재산 명세

가. 토지 · 건축물

①소유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종류	④소재지	④소재지	⑤면적(㎡)	⑥가액(시가표준액)
						만원
						만원
⑦합계액						만원

나. 전세금, 임차보증금

⑧임차인	⑨주민등록번호	⑩종류	⑪소재지	⑫면적(㎡)	⑬임대인 (주민등록번호)	⑭전세금(보증금)
						만원
						만원
⑮합계액						만원

다. 승용자동차

⑯소유자	⑰주민등록번호	⑱자동차 등록번호	⑲제조사	⑳차종	㉑연식	㉒배기량	㉓가액(시가표준액)
							만원
							만원
㉔합계액							만원

라.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 투자신탁 등의 금융재산

㉕예금주	㉖주민등록번호	㉗ 금융기관 · 체신관서명	㉘계좌번호	㉙예금 잔액
				만원
				만원
				만원
㉚합계액				만원

마.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㉛ 소유자	㉜ 주민등록번호	㉝ 유가증권종류	㉞ 발행회사 (사업자등록번호)	㉟ 수량	㊱ 가액
					만원
					만원
					만원
㊲ 합계액					만원

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㊳ 소유자	㊴ 주민등록번호	㊵ 소재지	㊶ 종 류	㊷ 분양회사 등(사업자등록번호)	㊸ 평가금액
					만원
㊹ 합계액					만원

사. 골프장회원권

㊺ 소유자	㊻ 주민등록번호	㊼ 골프장명 (사업자등록번호)	㊽ 회원권 종류	㊾ 회원권번호	㊿ 가액(기준시가)
					만원
㉑ 합계액					만원
총재산가액(⑦+⑮+㉔+㉚+㊲+㊹+㉑)					만원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4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명세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4서식]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통지번호			결정일자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근로장려금 (환급액 : 원) (단위 : 원)

구 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비 고
신 청			
결 정			

2. 근로장려금 신청액과 결정액의 차이(지급거부) 발생 사유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 안내사항

1. 근로장려금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액을 전부 환급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2.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5서식]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통 지 번 호		결 정 일 자	
2.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신청내용			
신청일자	근로장려금 신청액	비 고	
3. 환급 제한사유			
4. 환급 제한기간			
. . . ~ . . .			

귀하의 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사유와 환급 제한기간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 안내사항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6서식]

제　　호

조 사 원 증

조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조사대상	성　　명 (상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조 사 기 간	.　.　. ~　.　.　.		
	조 사 목 적			

위 사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확인 또는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지 방 국 세 청 장 (인)

210㎜ × 297㎜(신문용지 54g/㎡)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발전시켜 일하는 기쁨과 희망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TEL : (02) 2150-9411~2 FAX : (02) 503-9058
www.mofe.go.kr